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6443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배

변론 종결 2020. 4. 17.

판결 선고 2020. 5. 15.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834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33,660원 및 그 중 69,590,475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29,884,213원'을 '29,884,231원'으로 고치고, 제6쪽 제11행의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이와 다른 사실을'을 '문서의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다른 사실'로 고치며, 제7쪽 제8행의 '가맹계약약합의서에서'를 '가맹계약해지합의서에서'로 고치고, 제8쪽 제6행의 '그 중 69,540,475원에'를 '그 중 69,540,475원에 대하여'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합의해지의 경우엔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만 함에도 원고 보조참가 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중도해지의 경우처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그에 따를 것을 피고에게 강요하였고, 자료제공의무니,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등 불공정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이는 2018. 4. 15.까지 점포를 이전해야 하는

궁박한 상황에 놓인 피고의 상황을 이용한 것이고,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가맹점주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넣어서 이루어진 정산합의로서, 그 결과로 산출된 정산금은 불공정하므로, 참가인과 피고 사이 의 가맹계약 해지합의는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와 참가인이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종료수속비를 무조건 고객인피고가 부담토록 하는 조항이나, 집기철거비 및 부가세를 피고에게 부담시킨 조항이나,인테리어 잔존 가치를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사업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하는 조항이나, 합의해지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요구에 따른 위약금 11,457,517원을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부분은 불공정한 약관에 근거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위 가맹계약 해지합의 역시 무효이다.

(3) 그리고 피고는 참가인이 최종정산서를 보내오기 전이지만 2018. 4. 12.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원고에게도 사전 의견서 제출로 정산내용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의 제기를 했으므로, 피고는 최종정산서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18. 6. 18.자 최종정산서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정산서대로 합의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참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을 때 보험사고의 발생, 즉참가인의 손해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요구하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단 이 사건 청구금의 50%인 34,795,237원에 대해서 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인 갑 제3호증(가맹계약해지합의서)의 진정성립을 피고가 인정하는 이사건에서는, 위 합의서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위 합의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여서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 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서, 합의해지의 경우에 참가인이 사업자인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였다는, 그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 혹은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 등 정산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연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우선 과연 위 합의서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음으로 참가인이 피고의 공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정산합의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①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산 약정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그 요구를 수용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반드시 명확한 법적근거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그 약정된 정산내용 자체가 참가인이 현저하게 폭리를 취하는 등의 것이 아닌 한, 참가인이 요구한 정산내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위 정산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정산내용이 현저하게 폭리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참가인이 피고와 가맹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계약 제54조의 중도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8. 4. 16.경 참가인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상 중도해지시 피고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손해배상금을 1/2로 감액하고, 시설인테리어 변상금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장려금 반환 약정은 그 자체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인도로 인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한 것인 점, 피고는

건물인도를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4,500만 원,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 최종정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위 정산합의내용을 담은 최종정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였으면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계약해지합의서의 작성이 피고의 공박을 참가 인이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위 정산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가맹계약해지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최종정산서를 통지하고, 통지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문서에 의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정산서는 확정되는 것으로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최종정산서를 보내오기 전인 2018. 4. 12.에 피고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을 신청했거나, 최종정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사전 의견서 제출로 정산내용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합의서에서 정한 이의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겠고, 특히 최종정산서를 보내오기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내용은 '최종정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를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님이 자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최종정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보아최종정산서대로 합의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세 번째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을 때 보험사고의 발생, 즉 참가 인의 손해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이의제기를 했다 할지라도,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고는 피고에게 이를 확인한 사실,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하고, 법적 조치 및 당사자분쟁조치를 취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는데, 피고는 참가인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기하였던 조정신청을 취하한 사실만 확인되었던 사실, 반면 참가인은 가맹계약해지합의서를 제출하고 최종정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한 점을 소명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서, 원고는 내부적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조사를 완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보험금의 50%를 넘어 전액을 지급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금 전액에 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